

Ⅲ 주요 지적사항 요약

① 회계·계약분야

1)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발급대장 미작성 및 사용내역 미보고, 담당공무원 인계인수 無

가. 법인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미작성(미비치)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21년 기존 법인카드의 사용기간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발급받은 법인카드(2매)에 대하여 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보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미보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¹⁾,
- 2021. 07. 0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보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면장)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읍·면의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카드사용 내역 등을 재무관(면장)에게 보고(결재)하고 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다. 담당공무원 교체에 따른 법인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인계인수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20년 9월 이후 담당공무원이 6차례나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사용내역에 대한 인계인수(서면결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법인카드 사용 후 짧게는 1일, 길게는 18일이 지난 후 품의(결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짧게는 1일, 길게는 18일이 지난 후에 품의 결재 승인을 받는 등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공사계약 선금 지급 부적정

선금 지급률의 범위(최대 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선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필요시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선금 지급률을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상수월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공사'에 대해 선금 지급률의 범위(최대 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시설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단일공사(통합발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가조면 대학동마을 일원에 2건의 지하수 개발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 시기와 공종(지하수개발)이 동일하고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직선거리 대략 380m)해 있는 등 단일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여 2인 이상의 경쟁입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으로 분할하여 특정업체(○○○○○개발, ★★개발)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5) 하자책임 구분 곤란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부당 체결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적용,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나,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용역에 대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적용하여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분야

1)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

가조파크골프장 수목 식재공사 등 2건, 하자보수보증금 미 징구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가조파크골프장 수목 식재공사’ 등 2건의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서) 1,446,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징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음.

2) 전기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본 공사와 분리 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공사는 전문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22년 석강경로당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업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닌 전기공사를 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3)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1,308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창촌마을 등 2개소 마을정자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안전관리비 1,30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안금뒀들 용수로 정비공사’ 등 821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검사 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안금뒀들 용수로 정비공사’ 등 821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7,522천원 과다 지급

- ‘화곡 물맑은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7,522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6) 가조파크골프장 소나무 이식공사비 과다 계상

소나무 굴취 및 식재 단가 임의 적용(3배), 공사비 5,022천원 과다지급

-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 할 때에는 발주 당시의 가격이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가조파크골프장 소나무 이식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나무 이식 일위 대가 산정 시 소나무 굴취 및 식재 1주당 단가에 대하여 산정한 후 어떠한 근거도 없이 1주당 단가에 3배를 임의 적용하여 설계 하였고, 이후 설계 변경 등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총 5,022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3) 농림분야

1)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착오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농지(가조면 ◎◎ ☆☆☆번지)에 대하여 공익직불금 87,330원을 착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세무분야

1)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3,314,190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신축 등 취득한 물건들에 대해 신고 되지 아니한 물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1,806,10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 경작 2년 미만 농지 매각 경감 취득세 미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 가조면 ★★ ★ ◇◇◇◇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를 매도하였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1,995,05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자격이 없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법인에 대한 재산세 6,207천원 부적정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농조합법인 등 7개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하여 재산세 6,207,960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4) ○○○농업협동조합,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미적용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건물 존재에도 불구하고, 3,795천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1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2배)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 ○○○○농업협동조합의 재산세 과세에 있어,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되지 않은 건물(가조면 ○○○○ ☆☆☆번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원시설세 3,795,160원이 부적절하게 누락된 사실이 있음.

5)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주민세에 대한 조사 미실시, 5,135천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 등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 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지 않아 주민세(사업소분) 5,135,03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5] 복지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 가능여부 등 미확인, 현금지출 사용 관련 사항 안내 미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행복e음시스템에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가능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급여 관리자에게 현금지출 사용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안내(조치)하지 않는 등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등록장애인 재판정 관리 업무 소홀

재판정 기한 미안내(재판정 촉구 미통지) 및 유예절차 미진행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판정)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 ○○○○ 등 3명의 재판정 기한 경과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 및 재판정 촉구 안내(통지)하지 않거나 재판정 유예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주차표지판 회수·폐기 업무 소홀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미송달 및 시스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를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이 말소된 ★★★ 등 31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미회수 사유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소홀

용당소경로당 등 18개소,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용당소경로당 등 18개소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목적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집행내역(주류구입 등 부적절 지출 8건, 현금지출 가능 금액 초과 6건, 증빙서류 미비 5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1)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발급대장 무인·작성,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서명, 접수인 등 누락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사무편람」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받은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을 처리(접수)하면서, 발급대장 무인(6건), 위임장(2건), 위임자 신분증(2건), 발급대장 작성(1건), 위임장 서명(1건), 접수인(1건)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소홀

비밀사본 파기 시 2개의 적선 삭제 누락 및 비밀취급 비인가자 수령인 서명

-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비밀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비밀사본을 파기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적선 삭제가 누락되어 있거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인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 등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민방위 대원명부 송부 및 편성사실 등 통보업무 소홀

민방위대장 및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 대원명부 및 소속·임무 등 미 안내

-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알려야 하고,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는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에도
-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 대원명부 및 소속·임무 등을 통·리 민방위대장과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39개의 사업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미 가입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 감사일 현재까지 39개의 사업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과오 지급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631천원) 과오 지급

- 재택당직근무 시 초과근무를 한 당직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만큼 제외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정산하여야 하나,
- 초과근무 수당 정산 시 당직근무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시켜 정산하여 초과근무수당 631,850원(48건)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음.